

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소인규정
폐지 규정 (안)

제출자	재무과장
제출 연월일	2015. 11. .

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칩

서울특별시 강북구
(재 무 과)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소인규정 폐지규정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4년에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」에서 수입증지 소인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존치 이유가 없어진 수입증지 소인규정을 폐지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(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, 2015.10.8.)
- 2)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(조례 제994호, 2014.08.08.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: (2015.11.27. ~ 2015.12.16.) 예정

서울특별시 강북구 훈령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소인규정 폐지규정(안)

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소인규정은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」에서 수입증지 소인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재무과	
연 락 처	02-901-6434